

대구광역시 달성군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등에 관한 조례안

(전홍배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782
----------	------

발의연월일 : 2026. 1. 27.

발의의원 : 전홍배 의원,

박주용 의원, 곽동환 의원,

신동윤 의원

1. 제안이유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2조의4에 따라 대구광역시 달성군에 소재하는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에 대한 우선구매를 촉진하여 장애인의 직업재활과 생활 안정을 돕고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2조)

나. 군수의 책무에 사항(안 제3조)

다. 장애인 표준사업장 사업 및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4조~제5조)

라.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우선 구매에 관한 사항(안 제6조)

3. 제정 조례안 : “붙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붙임

나. 비용추계서 :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첨부(붙임)

대구광역시 달성군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등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2조의4에 따라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에 대한 우선구매를 촉진하여 장애인의 직업재활과 생활 안정을 돕고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 표준사업장”이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8호에 따른 사업장을 말한다.
2. “우선구매 대상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가. 대구광역시 달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소재하면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

나.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군이 출자·출연한 기관

3. 이 조례에서 정하는 것 외에는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군수의 책무)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용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해 우선구매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 및 시책을 종합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사업) 군수는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생산품에 대한 홍보 지원
2.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종사할 장애인에 대한 고용 연계
3. 그 밖에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지원) ① 군수는 제4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이나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비용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그 지원 방법·절차, 그 밖에 정산 등과 관련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을 따르거나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6조(우선구매) ① 군수는 법 제22조의4에 따라 군에 소재하는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생산품을 우선구매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시행령 제21조의5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한 해당연도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구매계획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2조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기관이 법 제22조의4에 따라 군에 소재하는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생산품을 우선구매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협력관계의 구축) 군수는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활성화 및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을 위하여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법 제43조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력관계를

구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법률)」(2025.11.11. 일부개정·시행)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간에 걸쳐 직업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중증장애인”이란 장애인 중 근로 능력이 현저하게 상실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3.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이란 장애인의 직업지도, 직업적응훈련, 직업능력 개발훈련, 취업알선, 취업, 취업 후 적응지도 등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조치를 강구하여 장애인이 직업생활을 통하여 자립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4. “사업주”란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행하거나 하려는 자를 말한다.
5. “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 다만, 소정근로시간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 미만인 사람(중증장애인은 제외한다)은 제외한다.
6. “직업능력개발훈련”이란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훈련을 말한다.
7.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이란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을 말한다.
8. “장애인 표준사업장”이란 장애인 고용 인원·고용비율 및 시설·임금에 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장(「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제22조의4(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의 우선구매 등) 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이 조에서 “공공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물품·용역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장애인 표준사업장에서 생산한 물품과 제공하는 용역(이하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이라 한다)을 우선구매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의 장은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의 구매계획과 전년도 구매실적

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매계획에는 공공기관별 총구매액(물품과 용역에 대한 총구매액을 말하되, 공사비용은 제외한다)의 100분의 1의 범위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비율 이상에 해당하는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의 구매목표를 제시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의 장은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을 수의계약으로 구매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의계약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른다.

④ 공공기관의 장은 소속 기관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의 구매실적을 포함하여야 한다.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구매계획의 이행 점검 등을 위하여 공공기관의 장에게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의 구매실적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⑥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공공기관의 장이 제출한 전년도 구매실적 과 해당 연도의 구매계획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2025.12.2. 일부개정·시행)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법인을 말한다.

가. 국가기관(「국가재정법」 제6조의 독립기관 및 중앙관서를 말한다)

나.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법」 제2조에 따른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시·군·구를 말한다)

다.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마.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 바.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의료원
- 사.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교육청
- 아.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및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라 설치된 각급 국립·공립 교육기관

「대구광역시 달성군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등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장애인 표준사업장 제품·용역 홍보 지원, 종사 예정 장애인의 고용 연계 등 제4조에 따른 사업 추진에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안 제4조 및 제5조)
- 법 제22조의4에 따라 군에 소재하는 장애인 표준사업장에서 생산한 물품과 용역에 대한 우선구매 추진 시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안 제6조)

2. 미첨부 근거 규정

-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2항제2호)

3. 미첨부 사유

- 본 조례안 제출 이전부터 의안 주관부서인 장애인복지과는 장애인표준사업장 생산품 구매율은 정부합동평가 중 사회적 가치 확산 관련 항목의 정량 지표로서, 특·광역시 평가 시 반영되어 왔음. 이에 달성군은 해당 항목에 대한 전년도 실적은 구·군 실적 자료로서 매년 대구광역시에 제출하고 있으며, 우선구매 목표치 달성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음.

*** 최근 3년 장애인표준사업장 생산품 구매액 실적 대구광역시 제출 현황**

(단위 : 백만원)

실적 기준연도	총구매액	생산품 구매액	생산품 구매비율	목표치 달성 여부	비고
2023	18,941	165	0.87	달성	
2024	15,549	162	1.04	달성	
2025	18,334	304	1.66	달성	2026년 제출 예정

(자료: 장애인복지과, 2025.12.29.기준)

-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사업과 그 지원을 위해 그 내용과 범위에 대한 구체적인 세부 계획 수립이 전제되어야 하므로 기술적 추계가 어려움.(안 제4조 및 제5조)
- 차년도 우선구매 촉진을 위한 최소 목표치는 법 시행령 제21조의5에 따라 매년 고용노동부에서 공고하는 차년도 구매계획에 따라 설정됨. 따라서 해당 최소 목표치의 변동에 따라 구매액 및 구매비율이 연동되므로 기술적 추계가 어려움.(안 제6조)

작성자

소속 및 직위

달성군의회 의원

성명(연락처)

전홍배 (☎ 2058)